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한근수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6. .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한근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청소년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라. 위원 위촉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마.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바. 회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사.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아.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자.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청년 정책과
- 라. 입법예고 : 2025. 5. 30. ~ 2025. 6. 6. (7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권익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책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정책 자문 및 건의, 인권 모니터링 등 구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청소년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최대 3회로 제한하였으며,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위원회가 정책 처리 결과를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도적·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제도 마련이 시급하므로 조례의 시의성과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 정착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운영지침 마련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안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현재 남양주도시공사 미래청소년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청소년시설운영 대행사업비’의 예산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2025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요예산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 7,000천원[전액 시비]

○ 행사운영비 : 3,400천원

- 워크숍 운영 1회 : 400,000원

- 위원회 운영비(각종 청소년 행사 참여 부스 운영, 타 지자체 교류 등) 250,000원 × 12회

○ 행사실비지원금 : 3,600천원

- 급식비 : 9,000원 × 25명 × 12회 = 2,700,000원

- 교통비 : 3,000원 × 25명 × 12회 = 900,000원

[참고] 2024년 소요예산 : 5,900천원 / 2023년 소요예산 : 5,000천원

4. 작성자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 과장 박미경